

[변경 대비 표]

■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변경 서류

펀드명	(변경 전) 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 (변경 후) 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변경서류	집합투자계약
변경사유	-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 -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
효력발생일	2026년 04월 01일

■ 변경대비표

항목	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펀드명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	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
제2조 (용어의 정의)	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8. (생략) <신설>	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1. ~8. (현행과 동일) 9. "적격"이라 함은 「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」 제5조의2에 따른 요건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BNK든든한TDF2050증권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"이라 한다. ② ~ ③ (생략)	①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"BNK든든한적격TDF205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"이라 한다. ② ~ ③ (현행과 동일)
제16조 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하며 아래 각 목의 한도를 준수한다. 가.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의 투자한도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 이하로 한다. 다만, 2030년 1월 1일(투자목표시점) 이후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 이하로 한다.	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하며 아래 각 목의 한도를 준수한다. 가.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5-23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)의 비중을 투자목표시점 이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상으로 하고, 2050년 1월 1일(투자목표시점) 이후에는

		<p>나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나.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 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)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80% 이내,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80% 이내로 한다.</p>
<부칙>		<u><신설></u>	<p><u>< 부 칙 2 ></u></p> <p>(시행일) 이 투자신탁은 202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<끝>